



축산법 시행령

[시행 2020. 2. 28.] [대통령령 제30477호, 2020. 2. 25.,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일부개정)

가축에 대한 살충제 성분의 농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축산업 혀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6550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축산업 혀가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 대통령령 제30477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으로 하고,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 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받은 사실을 자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의4(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제2항 중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이 조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제26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별표 2 제2호가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약관리법」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죽에 사용하여 그축산물이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10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허가취소
--	-------------------	--------------	--------------	------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2)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법 제17조 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다. 나목의 영업정지 기간은 별표 2 제2호가목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라.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축산업자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종축업자, 부회업자 및 정액등처리업자의 경우: 업종별 연간 매출액.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처분일 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가축사육업자의 경우: 축종별 사육규모. 이 경우 사육규모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1년간 연평균 사육규모(해당 가축의 1회전 사육을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종축업

3) 종오리업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34,000 미만	19
2	34,000 이상 51,000 미만	48
3	51,000 이상 68,000 미만	67
4	68,000 이상 85,000 미만	86
5	85,000 이상 119,000 미만	115
6	119,000 이상 170,000 미만	163
7	170,000 이상	192

나. 부회업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1,500 미만	1
2	1,500 이상 3,000 미만	2
3	3,000 이상 4,500 미만	3
4	4,500 이상 7,500 미만	6
5	7,500 이상 15,000 미만	10
6	15,000 이상 30,000 미만	15
7	30,000 이상 60,000 미만	42
8	60,000 이상	56

라. 가축사육업

4) 오리 사육업

등급	사육규모(단위: 마리)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5,000 미만	5
2	5,000 이상 10,000 미만	14
3	10,000 이상 20,000 미만	27
4	20,000 이상 30,000 미만	45
5	30,000 이상	54

▶ 관련 별지 서식 및 전체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최근제개정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6호, 2020. 2. 2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일부개정)

가축과 축산물의 거래 시 각종 서류를 줄이고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가축과 축산물 관련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6550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제·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6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제4호”를 “법 제17조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의2 및 제4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6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의 제출
2. 제45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발급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관련 별지 서식 및 전체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 – 국민소통 – 법령 정보 – 최근제개정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